

#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

## [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]

### ■ 공급개요 및 예정일정

- 위치 :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일원
- 규모 : 공동주택 지하 2층, 지상 8~22층 6개동 총 399세대
- 문의전화 1522-3382

### ■ 일정계획(예정)

구분	예정일정	참고사항
입주자모집공고	2021. 11. 24 (수)	http://www.은파레이크원.kr
특별공급 접수일자	2021. 12. 08 (수)	인터넷 청약
특별공급 당첨자발표	2021. 12. 20 (월)	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개별조회

- ※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.  
(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·호수 배정 결과 발표)

### ■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장소

구분	일시	장소
특별공급 신청	2021. 12. 08 (수) 09:00~17:30	한국감정원 청약 Home - PC : www.applyhome.co.kr
특별공급 당첨자 선정	2021. 12. 20 (월)	- 스마트폰 앱

### ■ 당첨자 선정 유의 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당첨자 선정 방법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군산시) 1년 이상 거주자,  
② 군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 순위로 공급함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**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**  
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개별 통지 및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.

## ■ 특별공급 신청자격

○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-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: 전체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)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 11. 15.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국가유공자, 장애인	청약통장 필요 없음
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, 중소기업 근로자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

## ■ 특별공급 공통사항

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</li> <li>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</li> </ul>
무주택 요건	<p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.</p> <p>※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(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)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각각 신청,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(당첨자 명단관리, 계약체결 불가)</p> <p>※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)</p> <p>가. 주택공급신청자</p> <p>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</p> <p>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p> <p>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p> <p>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</p>
청약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</li> <li>- 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은 제외)</li> </ul> <p>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p> <p>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</p> <p>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,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p>

## 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

구분	전용면적 85㎡이하	전용면적 102㎡이하	전용면적 135㎡이하	모든면적
군산시 및 전라북도	200만원	300만원	400만원	500만원

## ■ 기관 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무주택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	특별공급 신청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(인터넷 접수시 생략)
	○		확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/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 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- 발급기간 :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세대원	• 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조회 기간 :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(기록대조 시작일: 생년월일 / 기록대조 종료일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)
	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로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	
기관추천 특별공급		○	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	본인	•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